

대전 하늘채 스카이엔 II 생애최초 특별공급 안내문



- ※ 상기 내용은 청약참고자료만 활용하며, 청약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본 자료는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거나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
- ※ 사업주체는 청약 신청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(검증)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오류에 의한 당첨 취소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청약일정 및 당첨자 발표

구분	신청접수일	신청방법	당첨자 발표	자격검증 서류제출
일자	2021.12.27(월) (09:00~17:30)	•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(스마트폰앱 포함)을 원칙으로 함 • 한국부동산원 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 ※ 청약홈에서 청약제한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	2022.01.05(수) 한국부동산원 청약홈	2022.01.06(목)~01.16(일) (11일간) (10:00~17:00)

※ 인터넷 청약접수는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, ② 금융인증서, ③ 네이버인증서 또는 ④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※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9조 제2항에 따라 특별공급의 청약 접수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함. 단, 만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견본주택(10:00~14:00)에서 접수 가능(은행창구 접수 불가)하며 방문 시 서류 부족 및 서류 접수 중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접수 불가합니다.

생애최초 특별공급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3조 : 전용면적 85㎡ 이하 공급세대수의 10% 범위) : 74세대

타입	84A	84B	84C	합계
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수	31	22	21	74

신청대상 및 당첨자 선정방법

구분	내 용
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 ② 무주택세대주 ※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불가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및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 ④ 혼인(재혼포함)중이거나 미혼인 자녀 유(입양포함, 혼인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자녀) ⑤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(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)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※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·세액공제·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⑥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
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우선공급(50%)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% 이하인 자 ② 일반공급(20%)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% 이하인 자 ③ 추첨공급(30%) : 소득기준 초과, 자산기준 충족 ※ 우선공급,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미 선정 시 추첨공급(30%)에 포함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을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(21.2.2 개정) → 1년 미만 존속의 주택소유, 당첨사실은 거주기간 상관없이 적용 ※ 소형·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됨 ※ 과거 특별공급 1회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 할 수 없음 (단,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의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) ※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태어난 제외

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

소득 기준 구분	기준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
	우선공급 (기준소득, 50%)	130% 이하	7,839,208원	9,222,467원	9,222,467원	9,611,741원	10,111,430원	10,611,119원
일반공급 (상위소득, 20%)	130% 초과 ~160% 이하	7,839,209원 ~ 9,648,256원	9,222,468원 ~ 11,350,728원	9,222,468원 ~ 11,350,728원	9,611,742원 ~ 11,829,835원	10,111,431원 ~ 12,444,837원	10,611,120원 ~ 13,059,838원	
추첨제 (30%)	소득기준 초과 / 자산기준 충족	160% 초과, 부동산가액(3.31억원) 충족	9,648,257원 ~	11,350,729원 ~	11,350,729원 ~	11,829,836원 ~	12,444,838원 ~	13,059,839원 ~

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(1인당 평균소득(384,376) * (N-8), 100% 기준)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
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

구분	제출서류	발급처	
자격 입증 서류	근로자	• 재직증명서 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	* 해당직장 * 세무서
	자영업자	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•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	* 세무서
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	근로자,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	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(납부내역증명 포함) ※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	* 해당직장 * 세무서
	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(근로자, 자영업자,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)	• 아래 ①~③ 중 해당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(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) 및 납부내역증명서(종합소득세 납부자)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※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 중 소득공제, 세액공제,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	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/세무서

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

구분	제출서류	발급처	
근로자	일반근로자	•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•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(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(근로소득자용) ※ 전년도 휴직기간 있는 경우 ▶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("매월 신고 납부대상자 확인"으로 발급) 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 전이라면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	* 해당직장 * 해당직장/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	•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•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•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※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급되지 않을 경우 →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,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(개인정보 삭제)	* 해당직장 * 국민연금공단
	전년도 전직자	•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•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*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(학원강사, 보육교사 등)	•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상기 서류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	*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•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	* 세무서
	법인사업자	•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(신고자용) 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	* 세무서 * 등기소
	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	•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※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을 반드시 제출	* 국민연금공단 * 세무서
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	•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	* 국민연금공단 * 세무서	
	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•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 • 위촉증명서(직인날인) 또는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	* 해당직장 * 세무서
국민기초생활수급자	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(주택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)	* 주민센터	
비정규직, 일용직 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상기 서류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 ② ①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	* 해당직장 * 국민연금공단	
무직자	• 비사업자 확인각서(2020.01.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	* 견본주택	

※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(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/ 원본 및 직인날인 필수

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출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구비서류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서류	0		서약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 등	본인	• 견본주택에 비치
	0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*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•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
	0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)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0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름)
	0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"상세"로 발급
	0		청약통장순위(가입)확인서	본인	• 청약 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(가입)확인서 발급(장애인, 국가유공자 제외) •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 시(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)
	0		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	본인	•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-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2.17)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"Y"로 설정하여 발급
	0		병적증명서	본인	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
생애최초 특별공급	0		소득세 납부 입증서류	본인	•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2.17) 이전의 5개년도 서류
	0		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•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 전원 제출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, FAX수신 문서 가능)
	0	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•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 전원 제출(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,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)
	0	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인 경우 • 혼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	0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)	피부양 직계비속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만18세 이상의 "미혼자녀"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"상세"로 발급
	0		주인등록표초본 (전체)	피부양 직계존속	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등본상 등재된 사실 확인
	0	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• 소득 신청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, 과거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0		부동산소유현황	본인 및 세대원	• 견본주택에 비치 •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의 경우 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•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"부동산 소유 현황" 공개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) • 발급 시 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
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(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)	0		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	해당주택	• 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• 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
	0		무허가건물확인서	해당주택	•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의한 무허가건물임을 입증하는 서류
	0		건축물철거명절신고서	해당주택	•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철거 및 멸실을 확인하는 공문
	0		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서류	해당주택	• 주택공사가격확인서, 부동산거래계약고필증, 미분양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	0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• 인감증명서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. 단,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분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(수임인 인적사항 기재) • 인감도장 제출 생략 :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
	0		위임장	청약자	• 견본주택에 비치 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• 본인서명확인 방식 : 청약자가 자필한 위임장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)
	0		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*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•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

※ 상기 재직증명서(신청자 구비서류)는 최초모집공고일(2021년 12월 17일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※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관으로 발급번호(본인)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(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)
※ 상기 재직증명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(본인) 포함 직접 기재하여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,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 포함)로 간주합니다.